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-

## 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23. 9.

2. 발의자: 서민우 의원(대표발의)

### 3. 제안이유

-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임
- 이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과 그에 부수 되는 시설을 조성·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,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

### 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, 활성화 지원 사업(안 제5조~제7조)

### 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- 해당없음

### 6. 검토의견

-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은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, 활성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,
- 제정의 필요성, 타 조례 내용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
- 해당 조례안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그 목적 및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기에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유로 제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사료되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.